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1892 지역자원시설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피 고 ○○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역자원시설세 23,18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4. 설립된 회사로, ○○도 ○○군 B 소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군은 2020. 9. 23.부터 2020. 10. 5.까지 관내 골프장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누락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계량기 작동불량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게 '채수된 지하수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여야 하나 계량기 교체(고장) 등의 지하수 관리대장이 없어 사용량 검증이 불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23,189,540원(귀속년도: 2015. 10.~2018. 12.)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1. 1. 27.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7조 및 「○○도 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이하 위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하고, 위 조항을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 23,189,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사실상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까지 위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사실상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함으로써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채수된 물의 양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례조항은 '1일 최대 채수가능량*사용일'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의 원칙과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과세표준을 임의로 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조례조항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가) 지방세법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의무자로 보고(제143조 제1호 나목),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항 제2호). 한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을 정하면서(제147조 제1항 제1호), 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7조 제6항).

나)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는 특정 기간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과 같이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제3항). 특히 이 사건 조례조항은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임범위 한계 일탈 여부

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기 미설치, 파손 등으로 실제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때는 지하수 사용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산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법상 이러한 추산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조례조항은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다는 지방세법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따르면서 다만 채수계량기 고장 등으로 실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보조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을 임의로 창설한 것이 아니다.

(3) ○○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34조¹⁾ 제3항 또한 이 사건 조례조항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34조 제5항은 도지사에게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면 원고가 채수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조례에는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의 불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수계량기 관리·점검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 여

1) ○○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34조(부과·징수)

③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례에서 그 책임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례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 도세 조례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